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등급분류 제외 영화 상영 시 연령 확인 의무화 및
청소년 입장 금지 위반 제재 근거 마련 〉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0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등급분류 제외 영화 상영 시 연령 확인 의무화 및 청소년 입장 금지 위반 제재 근거 마련(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2
※ [참고] 협회, 민간업계 의견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

다. 회 부 일 : 2026. 4.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등급분류 제외 영화 상영 시 연령 확인 의무화 및 청소년 입장 금지 위반 제재 근거 마련(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영화를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⑨ (생략) ⑩ 제1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 -----제9항-----제10항에----- ----- ----- -----.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

현행	개정안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 8.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 ----- ----- ----- ----- -----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7항까지를----- ----- 3. ~ 8. (현행과 같음) ② -----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 ----- ----- ----- -----

현행	개정안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 12. (생략)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9조제8항----- -----. ⑥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5조(벌칙) ----- -----.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 · 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1의2. 제29조제6항을----- ----- 1의3. 제29조제7항의----- ----- 2. ~ 12.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 -----. 1. 제29조제5항-----제6항의----- -----

현행	개정안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29조¹⁾에 따르면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함.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⑩ (생략)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 7. (생략)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되는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은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는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그런데 상영등급분류의 면제 대상인 소형영화·단편영화가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여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형영화·단편영화의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인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영화업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²⁾는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 상영하는 경우에만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해당 영화는 등급분류 면제 대상 지위를 상실하므로 동조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 금지’ 위반에 해당함. 결과적으로 법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 제94조제1항³⁾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 7. (생략)

성할 수 있다고 봄.⁴⁾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형·단편영화의 대관 상영 현실을 고려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소년 입장 금지 및 행정처분의 의무 주체를 단순 장소 제공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아닌 ‘상영행사를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안이 상영등급분류 예외 요건의 핵심인 청소년 보호 원칙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롯데컬처웍스 및 메가박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소형·단편영화는 주로 주최 측이 관객을 직접 관리하는 대관 형태로 상영되므로 단순 장소 제공자인 영화관에 일률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영화관의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79

4)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봄.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2026. 4. 13)	[신중검토]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이해되나 의무부과 주체의 적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본 개정안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예외적 상영 과정에서 청소년이 관람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상영등급 분류 예외 중 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제1호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편임 - 영화관의 통상적인 영업 형태에서는 이미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콘텐츠만 상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예외 상영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개봉 상영이 아닌 대관행사임 · 이러한 대관행사의 경우 통상 행사 기획, 초청 대상 선정, 관객 모집, 사전 안내 등 실질적인 운영은 행사 주관처가 담당함. 반면 영화관은 관객 모집이나 초청 대상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장소와 상영 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침 · 결국 입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람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행사 주관처이며, 제1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영한 자' 역시 행사 주관처에 해당함. 따라서 청소년 관람 방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영화관 사업자가 아니라 행사 주관처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 방지 의무를 영화관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화상영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책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롯데컬처웍스 (2026. 4. 13)	<신중 검토> - 본 개정안의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및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영화 상영관에서 진행되는 대관 행사까지 청소년 관람 관리 책임이 영화관에 집중될 경우 운영상 부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대관 행사의 경우 관람객 모집 및 행사 운영을 주최 측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책임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메가박스 (2026. 4. 16)	<신중 검토> - 소형 단편 영화는 통상 독립영화가 해당되며 그로 인해 독립영화의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영화 산업의 기초 체력인 독립 예술 영화의 자율성을 훼손, 이는 현재 문체부 정책 방향성을 반대하는 법안으로 인지 - 개정안이 입장시키는 곳(상영관)에 책임을 부과하기에 실질적인 효과 없이 과도한 행정적 • 법적 의무만 부과하는 법이 될 것임